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70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서범수

이종배 · 임이자 · 박정하

강승규 · 김예지 · 김소희

우재준 · 김미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 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가령 살인, 마약, 성폭력, 아동학대, 음주운전,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·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, 마약, 성폭력, 아동학대, 음주운전,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,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0조의2).

법률 제 호

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"을 "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건"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
 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- 4. 「형법」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,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, 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,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, 제24장 살인의 죄 및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된

사건

- 5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건
- 6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,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3까지, 제6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가중처벌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제80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・종료 통보) 다음 각 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 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 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원
-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 기관
- 3. 행정안전부장관
- 4. 지방자치단체의 장

개 정 아

제80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) 감사원,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검찰 ·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 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 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 위와 관련된 사건
 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|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
 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

-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

   대한 불응
- 4. 「형법」 제2편제13장 방화 와 실화의 죄,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, 제19장 유가증권, 우 표와 인지에 관한 죄,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, 제24 장 살인의 죄 및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된 사건
- 5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건
- 6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,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3까지, 제6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